탄 원 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시민 무죄 탄원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8-1부 귀중
사건번호	2026고합555
피고인	신원식 / 전 국가안보실장
관련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탄원인	성명 _____ 연락처 _____

1. 재판부에 올리는 간절한 말씀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께. 저는 한 시민으로서 신원식 피고인의 재판에 관하여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탄원서를 올립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건이 헌정질서에 갖는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한 사람의 자유와 명예가 걸린 형사재판에서는 죄가 실제로 증명된 범위만큼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어떠한 정치적 입장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로 이 사건의 결론을 대신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원식 피고인에게 적용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각각 법률의 요건에 따라 충분히 증명됐는지 끝까지 살펴주시고, 증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2. 누구의 말과 행동도 확인 없이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공개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비상계엄 이후 우방국에 전달된 메시지와 관련하여 신원식 피고인이 다른 관계자들과 공모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신원식 피고인 측은 대통령으로부터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을 직접 지시받지 않았고, 이후 업무의 이행 경위도 알지 못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의 주장으로서,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이나 이미 확정된 판단인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재판부께서는 보도된 통화와 전달 경위, 각 사람에게 실제로 전달된 내용, 신원식 피고인의 인식과 결정, 이후 담당자들의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개별적으로 살펴 주십시오.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누구를 향한 지시였는지, 피고인이 내용을 알고 동의하거나 실행을 이끌었는지는 모두 증거로 가려져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이 탄원으로 다른 피고인의 행위나 형사책임을 단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3. 재판부께서 제기하신 물음이 충분히 해명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28일 공판준비기일에 관한 보도에서는 재판부가 대통령의 지시 상대방, 신원식 피고인의 관여 방식, 국헌문란 목적과 메시지 전달행위 사이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특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이 물음들이 단순한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피고인의 실제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밝히는 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가 설명을 요구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곧 무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 중대한 형벌을 부과하려면 먼저 그가 어떠한 행위를 어떤 인식과 의사 아래 했는지가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다투어지는 사실이나 부족한 설명을 추측으로 메우지 않고,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보장한 가운데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계엄 해제 이후의 행위는 그 시점과 성격을 구별해 주십시오

2024년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가 공표됐다는 사실과 내란죄의 법률상 성립·종료 시점은 구별해 판단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개된 보도에서 특검은 12월 14일까지 내란이 계속됐다는 취지의 해석을 제시한 바 있지만, 그것이 곧 법원이 확정한 결론은 아닙니다.

저는 계엄 해제 뒤의 행위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시기에 외교·안보 분야의 연락이나 설명 업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메시지의 목적과 내용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 후속 조치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세심히 살펴 주십시오.

부디 재판부께서는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과 형법상 중대한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구별하시고, 법률이 정한 요건이 실제 증거로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탄 원 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시민 무죄 탄원

5.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신중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내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형사책임은 공직의 높낮이나 관련 업무를 접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의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의 관련성 속에서 피고인이 그 목적을 인식하고 공유했는지, 어떤 의사로 어떤 행위에 관여했는지, 그 행위가 실제로 어느 정도 중요한 임무였는지를 구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가안보실의 대외 설명과 범죄에 대한 가담은 외형이 유사해 보일 수 있어도 행위의 내용과 인식, 목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외교 업무라는 이름만으로 책임이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전달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알고 중요임무에 참여했다는 결론까지 곧바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6. 직권남용 혐의에서도 개인의 실제 관여를 살펴 주십시오

형법 제123조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하여도 신원식 피고인이 가진 직무권한의 범위, 실제로 한 지시와 관여,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구체적인 결과를 각각 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공무원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했는지, 그것이 본래의 직무였는지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이었는지, 피고인의 직권 행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높은 지위가 책임을 가볍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기관 전체의 행위를 그 사람의 범죄로 확정할 수도 없다고 믿습니다. 직접적인 행위든 간접적인 관여든, 책임을 인정하려면 그 내용과 법률상 요건이 증거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7.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함께 헤아려 주십시오

사건에 관여한 사람들의 진술과 당시 작성된 문서, 통화 및 전달 기록을 함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른 진술이 있다면 어느 쪽에든 미리 무게를 두기보다 그 이유와 신빙성을 공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피고인 측에서 다투는 부분도 충분히 들으시고, 변경되거나 구체화되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반박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탄 원 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시민 무죄 탄원

8. 시민으로서 마지막까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논쟁이 크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사회의 갈등을 대신 판정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다른 사람의 발언이나 행동, 사회적 평가를 대신 가져와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에게 귀속되는 행위와 인식이 충분히 증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원식 피고인이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는 사실 역시 이러한 심리를 생략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께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시든 오직 기록과 증거, 법률에 기초해 그 사람에게 증명된 책임만을 판단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9. 결어 – 무죄를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께.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을 요구하고, 제325조는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원식 피고인에게 적용된 두 혐의 각각에 관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요소가 그 기준에 이르도록 증명되지 않았다면, 부디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혹시 일부 혐의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시는 경우에도 피고인 개인의 실제 역할, 그 당시의 인식, 독자적인 판단의 범위와 구체적인 결과를 구분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예비적인 말씀은 저의 주된 무죄 요청을 바꾸는 취지가 아닙니다.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법의 예외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한 시민의 탄원이 실제 재판의 증거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자유와 명예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추측이 아니라 충분한 증명이 기준이 되고, 증명되지 않은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지 않는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탄원인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